

#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자금 융자 접수, 심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서류 중복 제출 및 대출지연 등 대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융자금의 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시설투자자금, 창업자금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종전에 자금 융자 접수, 심사 및 결정을 시에서 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접수, 심사 기능을 위탁하여 자금 대출 기업이 중복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불편과 대출지연 요인 해소로 기업의 편의 도모(안 제7조제3항).
- 나.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전자금(한도5억원)에서 시설투자자금(한도7억원), 창업자금(한도 5천만원)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지원내용 확대(안 제9조제1항내지 제2항)
- 다.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2%~3.5% 낮게 하던 것을 1.5%~3.0% 낮게 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을 인하의 여지 마련(안 제9조제3항)
- 라. 자금의 상환시 종전에 1회에 한하여 3월간 연장하던 것을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 지원(안 제9조제5항)
- 마. 대출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등 평가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토대 마련(안 제13조제2항)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-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 : 의견제출 없음
  - 입법예고 : 2003. 11. 1 ~ 11. 21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  - 방침 결정문
  - 현행조례(전문)

##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창업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.
6. “시설투자자금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, 정보화,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,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5조제5호중 “안산테크노파크”를 “경기테크노파크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 (융자신청 및 평가 등)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(자료)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시장은 필요할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,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8조 (융자대상 선정)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,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융자조건”을 “융자”로 하고,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9조 (융자) ①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,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,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:
- ②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1. 운전자금 : 5억원
2. 시설투자자금 : 7억원
3. 창업자금 : 5천만원

- ③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.5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한다.
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,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⑤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⑥대출절차,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 등을 따르되,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.

제12조중 “기금융자”를 “융자”로 한다.

제13조중 “기금”을 “자금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센터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담당 이정민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김경림 (행정 2841)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            1. ~ 4. (생략)  <u>〈신설〉</u>  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<u>5.“창업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.</u>  <u>6.“시설투자자금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, 정보화,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,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융자대상업체)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.            1. ~ 4. (생략)  <u>5. 안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</u>            6. ~ 8. (생략)</p>	<p>제5조(융자대상업체) . . . . .            . . . . .            . . . . .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5. 경기테크노파크 . . . . .            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융자신청)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융자대상 업체가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융자신청 및 평가 등)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(자료)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          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,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</p>
<p>제8조(융자대상 선정)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 대상 적격여부 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을</p>	<p>제8조(융자대상 선정)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 후, 그 결과를 신청인 및</p>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율자조건) ①율자금의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. ②율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2%내지 3.5% 낮게 정한다. ③제2항의 저리 유파에 따른 일반 대출금 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금 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④(삭제 '98.5.25) ⑤율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. ⑥대출절차,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⑦율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 한 운전자금에 한한다.</p>	<p>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율자) ①율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,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 자금 으로 구분하여 유파하며, 용도별 유파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②업체당 유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 1. 운전자금 : 5억원 2. 시설투자자금 : 7억원 3. 창업자금 : 5천만원 ③율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.5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한다.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 유파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, 시장 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⑤율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 ⑥대출절차,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은 금 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 등을 따르되, 시 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.</p>
<p>제12조(변경사항 통보) 기금율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, 대표자,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변경사항 통보) 유파 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</p>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사후관리)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13조(사후관리)① ··· 자금 ··· ··· ··· ··· ··· ···</p> <p>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협회 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